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73
----------	-----

2019년 4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19년 3월 29일
- 다. 회부일 : 2019년 4월 3일
- 라. 상정일 : 제28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4월 26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백호 평생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시의 청소년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시의 청소년시설 사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안 제8조제4항).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 그 밖에 청소년시설 감면 관련 규정 정비(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19. 2. 21. ~ 3. 13.) 결과: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시립 청소년시설 사용료를 감면(안 제8조제4항)하고, 용어정비(안 제8조제1항) 및 감면규정을 정비(안 제8조제3항 신설, 제5항~제7항 삭제)하고자 제출하였음.
- 안 제8조제1항은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사용자'로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6조1)에 사용자의 약어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 자구를 간략화 한다는 점에서 적정한 것으로 보여짐.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료 등) ① 운영자는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 강습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u>청소년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u> 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울시보에 고시한다.	제8조(사용료 등) ① 운영자는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 강습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u>사용자</u> 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울시보에 고시한다.

- 안 제8조제3항은 감면규정의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현행 제8조의 제3항(사용료 반환규정)과 제4항(준용규정)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현행 제5항, 제6항, 제7항의 이동) 및 제4항(제로페이 감면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1)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시설의 사용 등) ① 청소년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행		개정안
현행 제8조제5항 ⑤ 운영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별표 1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 월 사용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	안 제8조제3항제1호 1. 18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별표 1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월 사용료 100분의 10 감면
현행 제8조제6항 ⑥ 제1항에 불구하고 운영자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이 별표 1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다둥이 행복카드에 기재된 자녀수가 3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안 제8조제3항제2호 2.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이 별표 1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다만, 자녀수가 3 이상 기재된 다둥이 행복카드에 한함) : 월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현행 제8조제7항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거나 체육활동을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시설대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안 제8조제3항제3호 3.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거나 체육활동을 위하여 별표 1의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 : 시설대관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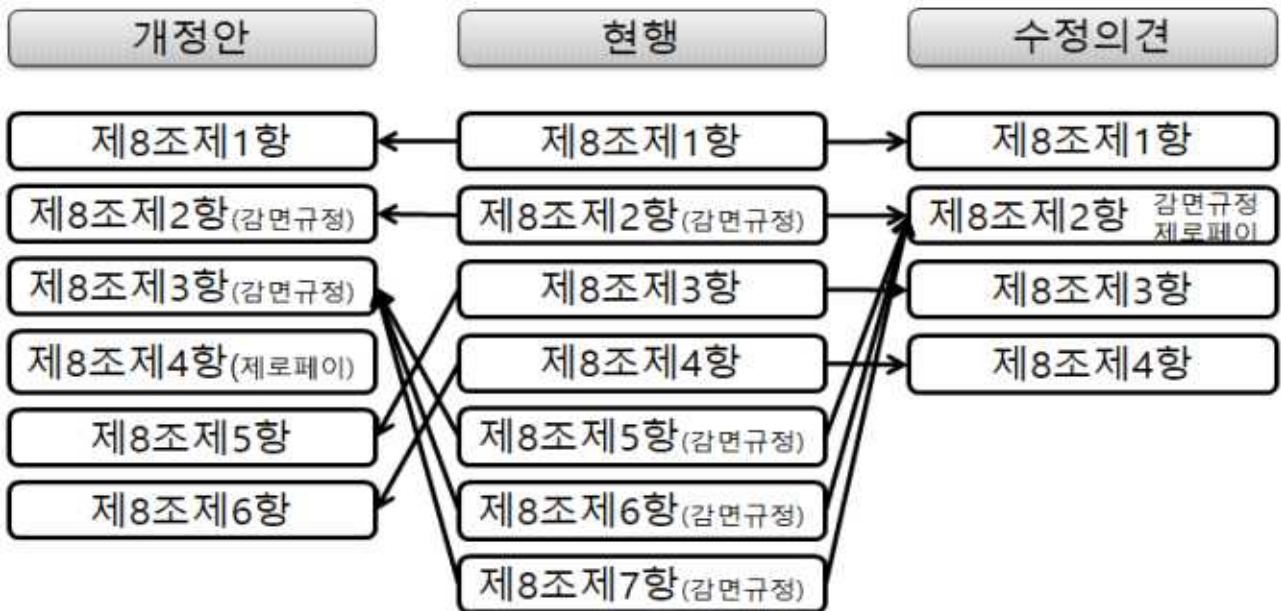
○ 안 제8조제3항으로 이동할 현행 제8조제5항(2008.7.30. 신설), 제6항(2009.5.28. 신설), 제7항(2016.5.19. 신설)은 제8조제2항의 감면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필요와 여건변화에 따라 새로운 ‘항’을 신설하여 감면조항을 둔 것으로, 감면규정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본 개정안은 이동 대상이 되는 감면규정(제8조제5항, 제6항, 제7항)을 제8조제2항의 각호로 정비하지 않고, 또 다른 항(제8조제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출하고 있는바, 합리적인 조문체계 정비를 위하여 감면규정을 하나의 항(제8조제2항)으로 통합하는 방안²⁾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 별첨1 참조. 본 조례의 감면규정 조문체계 정비에 대한 수정의견.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사용료 등)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그 가족 중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있는 청소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4.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청소년



- 안 제8조제4항은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강습료 및 이용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100분의 10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현행 제8조제5항, 제6항, 제7항까지)에 따른 감면을 받을 경우는 제외하도록 신설 하려는 것임.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이용자에게 한시적(안 부칙 제2조, 2019.12.31.까지)으로 사용료 등을 감면하여 제로페이 이용자를 확산시키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제로페이 도입배경** :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IMF(1997년)를 극복하기 위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내수소비 진작 및 소득의 투명성 확대, 세금탈루 억제 등)의 부작용(무분별한 소비, 신용불량자 양산 등)과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과도한 사회적 비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 비용, 중간매개자-VAN社와 PG社-의 거래비용)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모바일 직불결제 방식인 제로페이를 도입하였음.

※ **VAN(Value-Added Network)이란**, 부가가치 통신망이라는 뜻으로 가맹점과 카드사간 네트워크망을 구축하여 수많은 매장들과 카드사들이 일일이 계약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여 카드사는 VAN사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 **PG(payment Gateway)社**는 온라인 카드결제 혹은 전자결제가 가능하도록 전자지불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온라인 결제를 대행하고 카드사나 금융기관과의 결제중계업무를 수행한다. PG사는 VAN를 거쳐 카드사와 거래를 하기 때문에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PG사와 VAN사, 카드사까지 3단계에 걸쳐 수수료를 지불한다.

- 다만, ① 사용료 감면의 조례 규정 가능 여부, ② 감면범위의 적정성 및 효율성 ③ 감면비용 규모 및 서울시 부담비용 적정성, ④ 제로페이 정책의 타당성, ⑤ 감면기간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먼저, 「지방자치법」³⁾은 조례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 등을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용료 등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⁴⁾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징수법」⁵⁾은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제로페이로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는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3) 「지방자치법」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법」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5) 「지방세징수법」24조(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예금계좌가 설치되어 있는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해당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둘째, 감면대상 및 감면기관에 대해서 살펴보면, 안 제3조(현행 제8조 중 제5항, 제6항, 제7항)에 따른 감면을 받을 경우는 제외하도록 제로페이와 중복감면을 배제하고 있는바, 중복배제가 제로페이 활성화와 유인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개정과 부합하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 100% 감면 : 본 조례 제8조2항에 따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그 가족중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있는 청소년,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④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⑥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청소년
- 50% 감면 : 본 조례 제8조7항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
- 30% 감면 : 본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른 다동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
- 10% 감면 : 본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최근 3년간 청소년수련시설 감면현황 〉

(단위:천원)

	소계	기초생활 수급자 등	가임여성	다동이가족 청소년	비영리 목적 대관
소계	3,081,903	1,656,698 (53.8%)	788,179 (25.6%)	584,831 (19.0%)	52,194 (1.7%)
2016	1,092,511	604,744 (55.4%)	284,766 (26.1%)	192,945 (17.7%)	10,056 (0.9%)
2017	1,050,861	563,671 (53.6%)	262,542 (25.0%)	205,478 (19.6%)	19,170 (1.8%)
2018	938,531	488,283 (52.0%)	240,871 (25.7%)	186,408 (19.9%)	22,968 (2.4%)

○ 청소년시설 이용료는 다른 시설(공원입장료, 자전거 대여, 주차장 등)의 이용료보다 금액이 큰 만큼 할인혜택도 커 시민들의 제로페이 이용확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청소년시설에서는 기존의 감면규정에 따라 매년 10억8천만원 규모의 감면액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전액 보전해야 할 평생교육국은 5년 평균 76.8%(평균 8천3백만원) 수준으로만 보전하고 있어,

제로페이 감면으로 인해 감면보전액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로페이 감면이 청소년시설 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평생교육국은 감면액을 전액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청소년시설의 감면액 및 보전액 현황 〉

(단위:천원)

구분 (년)	감 면 액					보전금	미보전액	보전율 (%)
	계	저소득 (8조2항)	가임여성 (8조5항)	다동이 (8조6항)	대관료 (8조7항)			
소계	5,396,441	3,024,041	1,376,460	946,252	49,687	4,145,681	1,250,760	76.8%
평균	1,079,288	604,808	275,292	189,250	16,562	829,136	250,152	
2018	1,046,350	553,866	259,749	206,131	26,604	897,123	149,227	85.7%
2017	1,089,376	566,519	286,092	214,904	21,861	802,178	287,198	73.6%
2016	1,087,116	618,623	278,058	189,213	1,222	836,439	250,677	76.9%
2015	1,066,251	622,407	267,195	176,648	-	946,131	120,120	88.7%
2014	1,107,348	662,626	285,366	159,356	-	663,810	443,538	59.9%

※ 청소년시설의 감면액 보전은 매 분기마다 시행하여 전년 4/4분기의 감면액이 금년의 보전액으로 집계되고 있어, '해당연도의 순수 감면액'과 '자료상 감면액·보전액·보전율'이 상이함.

- 또한, 청소년시설의 결제시스템에서는 개인결제와 단체결제를 구분할 수 없어, 결제현황을 통해 개인과 단체의 결제비율은 알 수 없으나, 단체의 청소년시설 활용은 시설대관에 집중되고 있고, 청소년시설은 개설된 프로그램에 개인이 수강신청을 하는 시스템이라는 점, 청소년보다 지역 주민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시민이 제로페이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은 양호하다고 보여짐.
- 다만, 감면금액에 대한 전액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소년시설이 제로페이 사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동기가 없어 보이는바, 조례 개정의 실익이 있을지 여부, 단기간의 성과주의에 치중한 조례 개정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청소년수련시설(27개소) 이용료 결제 현황 〉

(단위:천원)

	금액 기준					결제 수 기준				
	소계	카드결제		현금결제		소계	카드결제		현금결제	
소계	125,948,704	102,237,434	81.2%	23,711,270	18.8%	3,103,864	2,145,284	69.1%	958,580	30.9%
2016	40,608,443	33,121,107	81.6%	7,487,336	18.4%	969,261	671,920	69.3%	297,341	30.7%
2017	41,648,931	33,813,650	81.2%	7,835,281	18.8%	992,325	704,128	71.0%	288,197	29.0%
2018	43,691,330	35,302,677	80.8%	8,388,653	19.2%	1,142,278	769,236	67.3%	373,042	32.7%

- 본 개정조례안은 모든 청소년 시설을 대상으로 제로페이 결제 시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은 시립청소년시설 56개소 중 27개소⁶⁾만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나머지 시설은 제로페이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모든 청소년시설을 감면 시설로 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제로페이 미가맹 청소년시설 : 쉼터·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성문화센터 전체 및 문화교류센터, 활동진흥센터

6) 첨부2.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중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 시설

※ 제로페이 미가맹 사유 : 평생교육국은 일부 청소년시설의 제로페이 미가맹 사유를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면세사업자로 ‘고유번호’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제로페이 가맹신청이 거부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시립청소년시설의 제로페이 가맹현황

구분	자치구	시 설 명	가맹점 등록 여부	위 치
1. 청소년활동시설	① 청소년수련관			
	중구	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	가맹점	을지로11길 23
	성동구	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	가맹점	고산지로 260
	광진구	시립광진청소년수련관	가맹점	구천면로 2
	동대문구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가맹점	제기로33길 25
	중랑구	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	가맹점	용마산로 217
	"	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가맹점	송림길 156
	성북구	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	가맹점	한천로95길 7
	강북구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가맹점	4.19로 74
	도봉구	시립창동청소년수련관	가맹점	노해로69길 132
	노원구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가맹점	덕릉로70길 99
	은평구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가맹점	백련산로4길 16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청소년수련관	가맹점	연희로32길 129
	마포구	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	가맹점	월드컵로 212
	양천구	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	가맹점	목동서로 143
	강서구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가맹점	곰달래로57가길 26
	구로구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	가맹점	구로동로 141
	금천구	시립금천청소년수련관	가맹점	금하로30길 54
	영등포구	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	가맹점	문래로 110
	동작구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가맹점	여의대방로20길 33
	강남구	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	가맹점	광평로114
	강동구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가맹점	아리수로93길 47
	② 특화시설			
	중구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비가맹	퇴계로26가길 6
	용산구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가맹점	한강대로 255
	영등포구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가맹점	영신로 200
	동작구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비가맹	여의대방로20길 33
	은평구	시립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가맹점	통일로 684
	노원구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가맹점	노원로 16길 6-21
	③ 유스호스텔			
	중구	시립서울유스호스텔	가맹점	퇴계로26가길 6
	영등포구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가맹점	영신로 200
	2. 청소년복지시설	금천구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여)	비가맹
"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여)	비가맹	독산로 73길 10-16
관악구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남)	비가맹	신림로 376
"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남)	비가맹	난곡로24가길 54
중랑구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비가맹	송림길 156
용산구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비가맹	만리재로 156-1
(이동)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서남)	비가맹	강북지역(이동형차량)
(이동)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동남)	비가맹	강남지역(이동형차량)
은평구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여)	비가맹	통일로 92길 37-6
강북구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비가맹	한천로 140길 5-24
중구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비가맹	을지로11길 23
3. 기타청소년시설	광진구	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비가맹	구천면로 2
	동작구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비가맹	여의대방로20길 33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비가맹	가좌로134
	강북구	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비가맹	삼각산로 158 송림빌딩 56층

구분	자치구	시 설 명	가맹점 등록 여부	위 치
	도봉구	시립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비가맹	노해로69길 132
	강서구	시립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비가맹	우장산로 117
	광진구	시립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비가맹	구천면로 2
	도봉구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비가맹	노해로69길 132
	영등포구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비가맹	영신로 200
	중랑구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비가맹	면목로 23길 20
	동작구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비가맹	여의대방로 20길 33
	강남구	시립청소년드림센터	비가맹	봉은사로114길 43

○ 또한, 비가맹 청소년시설 중에서도 상담, 치료, 교육 등에 대한 이용료를 수납하고 있는 시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성문화센터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 사용이 불가능하여 시민에게 혼란 및 불편을 유발시킬 수 있는바, 행정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감면시설을 지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부가적으로 청소년시설이 소상공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영어·창의마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공공기관(민간위탁 기관)으로 분류되며,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을 상회하고 있어 소상공인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시민들의 제로페이 사용 경험 및 체험과 유인을 위해 영어·창의마을, 운영법인, 시민에게 실익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의 활성화를 위해 영어·창의마을 사용료의 한시적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거나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셋째, 본 개정조례안에 따라 추계되는 감면손실액은 8억 7천만원 규모이며,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51억원 규모인바, 서울시가 신용카드를 대신할 제로페이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부가서비스(이용료 감면) 제공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본 조례 시행시 감면손실액 산출현황 〉

(단위:천원)

구 분	사업수입 (8개월)	제로페이 이용 결제(30% 가정)	제로페이 이용시 감면손실액 (10%할인)	비고
금 액	28,954,673	8,686,402	868,640	

〈 제로페이 할인 적용시 수입감소 추계 〉

(단위:백만원)

구분	계	직영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연간	8,842	1,037	444	7,361
(5~12월)	5,158	605	259	4,294
			(소계: 4,553)	

※ 연간 감소분을 기준으로 제로페이 감면 시행기간 7개월(5월~12월) 환산 추계

※ 출처 : 공공시설이용자에 대한 제로페이 할인(감면) 추진계획(시장방침, 2019.3.1.)

○ 넷째, 서울시는 제로페이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수수료를 인하(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⁷⁾)하여, 연매출이 소액인 가맹점에서는 신용카드와 제로페이의 수수료 격차가 감소하였고,

〈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 〉

가맹점 구분(연 매출액 기준)		현행	개선안	인하폭	
신용	우대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3억원	0.8%	0.8%	-
		3~5억원	1.3%	1.3%	-
		5~10억원	약 2.05%	1.4%	약 0.65%p
		10~30억원	약 2.21%	1.6%	약 0.61%p
	일반 가맹점 (평균수수료율)	30~100억원	약 2.20%	평균 1.90%	평균 0.3%p
		100~500억원	약 2.17%	평균 1.95%	평균 0.22%p
체크	우대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3억원	0.5%	0.5%	-
		3~5억원	1.0%	1.0%	-
		5~10억원	약 1.56%	1.1%	약 0.46%p
		10~30억원	약 1.58%	1.3%	약 0.28%p
	일반 가맹점 (평균수수료율)	30억원 초과	약 1.60%	평균 1.45%	평균 0.15%p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18년 적격비용 산정을 통한 카드수수료 개편 부담은 낮추고, 혜택은 넓히고, 공정성은 높이겠습니다.) 2018.11.26. _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3p 발췌

7)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8.11.26.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로페이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계좌이체도 금융기관(은행) 간 수수료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신용카드사를 계열사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로페이 정책에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동기가 없을 수 있으며,
- 제로페이 이용자가 기존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신용공여기능(후불결제 기능), 포인트 적립, 편리성, 실적에 따른 대출이자율 감면 등 편익을 포기하고 제로페이를 이용할 충분한 유인효과도 적다고 하겠음.

<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유 - 중복응답 >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결제할 수 있기 때문	50.9%
포인트, 마일리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	41.0%
잔돈을 주고받지 않아 결제과정이 간편하기 때문	37.5%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	31.2%
통장 잔액이 없어도 결제할 수 있기 때문	20.1%
할부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	19.0%
기타	0.2%

출처 :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9. 조세특례 심층평가(I)_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200p

- 또한, 가맹점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결제방식이 용이하거나,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결제 방식에 주력하는 등 사용자(판매자)에게도 유인동기가 적을 수 있고,
- 한정된 시장에서 공공기관의 제로페이의 활성화는 이미 보급을 시작한 민간의 직불 결제 방식(체크카드 및 민간회사의 직불결제 시스템(네이버, 카카오 등))과 중복 소지도 있으며,
- 제로페이는 신용카드의 단점을 보완한 대체제가 아닌 ‘소비자의 선의에 의지하여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시민들의 인식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다섯째, 안 부칙 제2조는 본 감면의 유효기한을 금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⁸⁾」에서는 조례에 따른 감면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제로페이 사용에 따른 감면은 한시적(약 6개월 간, 2019. 12.31.까지)인 것으로 상위법령에는 부합하다고 하겠으나, 제로페이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감면기간을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감면기한을 확장설정(2020년 12월 31일 이후까지)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제로페이의 적용기한 〉

○ **(적용기한)'19년 말까지 적용(필요시 1년 연장)**

- 제로페이 사용검험을 통한 **이용자 확산 유인정책인 점, 수입감소분 보전 등 재정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하여 한시적용

출처 : 서울시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제로페이 할인(감면) 추진계획(시장방침), 3p 발췌

- 부수적으로, 안 제8조제3항제1호는 18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을 감면토록 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이 13세로 규정하고 있는바, 잘못 표기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조문대비표 〉

개정안	수정의견
제8조(사용료 등) ③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한다. 1. 18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별표 1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월 사용료 100분의 10 감면	제8조(사용료 등)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7.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별표 1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월 사용료 100분의 10 감면의 여성이 별표 1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월 사용료 100분의 10 감면

8)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고, 감면 규정의 체계적인 조문 정비를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감면 규정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감면규정을 병합함(안 제8조제2항).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573
----------	------------

제안연월일 : 2019년 4월 30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고, 감면 규정의 체계적인 조문 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면 규정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감면규정을 병합함(안 제8 조제2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 제3항, 제4항을 삭제하고, 제8조제2항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별표 1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월 사용료 100분의 10 감면
8.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이 별표 1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다만, 자녀수가 3 이상 기재된 다둥이 행복카드에 한함) : 월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9.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거나 체육활동을 위하여 별표 1의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 : 시설대관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10.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제8호, 제9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제8조 제5항(현행 제3항과 같음)과 제6항(현행 제4항과 같음)을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으로 한다.

안 부칙 제2조 중 “제8조제4항의”를 “제8조제2항제10호의”로 한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신·구 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8조(사용료 등) ① 운영자는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 강습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u>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u>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울시보에 고시한다.</p> <p>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그 가족 중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있는 청소년</p> <p>2. 「국가유공자 등 예</p>	<p>제8조(사용료 등) ① 운영자는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 강습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u>사용자</u>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울시보에 고시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제8조(사용료 등)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p>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4.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청소년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6. (개정안과 같음)

< 신 설 >

7.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별표 1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월 사용료 100분의 10 감면

< 신 설 >

8.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이 별표 1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다만, 자녀수가 3 이상 기재된 다둥이 행복카드에 한함) : 월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신 설 >

9.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거나 체육활동을 위하여 별표 1의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 : 시설대관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 신 설 >

10.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제8호, 제9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 설 >

③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한다.

1. 18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별표 1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

< 삭 제 >

용하는 경우 : 월 사
용료 100분의 10 감면

2.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이 별표
1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다만, 자녀수가
3 이상 기재된 다둥이
행복카드에 한함) :
월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3.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
등학교가 비영리목적
으로 공연 및 학술 행
사를 주최하거나 체육
활동을 위하여 별표 1
의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 : 시설대관 사용
료 100분의 50 감면

<신 설>

④ 소상공인 간편결제시
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자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이 지정한 운영기관
이 운영하는 결제시스
템을 말한다. 이하 같
다)으로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

<삭 제 >

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운영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④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따른다.

⑤ 운영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별표 1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 월 사용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을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감면한다.

⑥ 제1항에 불구하고 운영자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이 별표 1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다둥이 행복카드에 기재된 자녀수가 3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영리 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거나 체육 활동을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시설대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삭 제>

<삭 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8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삭 제>

<삭 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8조 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사용자”로 한다.

제8조제2항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별표 1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월 사용료 100분의 10 감면
8.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이 별표 1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다만, 자녀수가 3 이상 기재된 다둥이 행복카드에 한함) : 월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9.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거나 체육활동을 위하여 별표 1의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 : 시설대관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10.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제8호, 제9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8조 제5항, 제6항, 제7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8조제2
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 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p>제8조(사용료 등) ① 운영자는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 강습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u>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u>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울시보에 고시한다.</p> <p>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그 가족 중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있는 청소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4.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p>제8조(사용료 등) ① 운영자는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 강습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u>사용자</u>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울시보에 고시한다.안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청소년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청소년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별표 1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월 사용료 100분의 10 감면

8. 다등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이 별표 1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다만, 자녀수가 3 이상 기재된 다등이 행복카드에 한함) : 월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9.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거나 체육활동을 위하여 별표 1의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 : 시설대관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10.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제8호, 제9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④ (생략)

⑤ 운영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별표 1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 월 사용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⑥ 제1항에 불구하고 운영자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이 별표 1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다둥이 행복카드에 기재된 자녀수가 3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거나 체육활동을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시설대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